

## 경제정책 용어 해설

자료 : KDI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제도와 법체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보도자료 등에도 종전에는 들어 보지 못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경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들을 수시로 소개하여 본지 독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編輯者主>

### ■ 교부금(交付金) · 교부세(交付稅)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지급, 국가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한 지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입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교부된다.

또한, 사용내역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진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15%로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자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투자자는 교환사채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유주식의 직접 매각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하락 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발생하는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 ■ 구매자관리지수(PMI : Purchasing Manager's Index)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약 3백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을 말하나 통상 NAPM이 지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구매자관리지수는 기업의 신규주문·생산 및 출하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 ■ 구조조정기금(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

하는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기금이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강구조조정 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운영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투자 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부도가 났거나 화의·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크게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으로 나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대출해 주어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주는 것이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지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털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1~3년 만기)과, 시설자금(3~7년 만기)을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장기 대출과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주식투자기금은 회생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사를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킨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도 한다.

## ■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국가재정이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예산회계법]의하면 보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

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

○제24조 제1항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 국제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조세경쟁이라 한다.

국제조세경쟁은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뿐 아니라 일국의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일국의 조세주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이런 상호 유해한 조세경쟁은 세부담을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으로부터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게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G7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OECD의 재정위원회(CFA)에서 '유해조세경쟁 포럼(FHTP: 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을 결성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조세피난처(tax haven)와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를 통한 조세경쟁이 각국 및 전세계적 차원에서 세원감소로 인한 재정기반의 잠식과, 국제적 투자의 왜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및 각국의 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제도를 조사하여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외금융제도가 잠정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2003년 4월까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며, 여기에 이벤트와 농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농촌관광전략이다.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 녹색관광)이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녹음이 짙은 전원에서의 관광을 '녹색관광' 이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휴과 위락 중심, 대규모 시설 의존형의 대중관광(mass Tourism)과 다른 점은, 자연과 피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고, 농촌에서의 농사일 체험 및 자연관찰 등 풍부한 체험테마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펴왔고, 최근에는 이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농산어촌휴가법], 이탈리아에서는 [농촌휴가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민박 지트(G tes), 영국의 팜 할러데이(farm holiday), 일본의 팜 인(farm inn)이 그린 투어리즘의 대표적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2001년 5월, 마을 또는 마을간 연합을 기본단위로 하고 농촌주민의 합의·창의·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 ■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석유파동·이상기후·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장기적인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한다.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목표

(inflation targeting)제도 운영국가 등 각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첫째 전체물가 변동 중에서 식료품·에너지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보는 방법,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 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중이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 및 근원 인플레이션 동향]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
* 소비자물가	4.9	4.5	7.5	0.8	2.3	4.6
* 근원 인플레이션	5.1	3.4	5.9	0.3	1.3	4.3

## ■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을 말한다.

포스트 리엔지니어링(post reengineering) 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우 유용한 비용절감 수단이다.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모든 공정을 혼자 도맡아 하지 않고, 각각의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현장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인건비와 차량을 비롯한 장비투입 경비 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여 주는 건설관리사업(CM) 분야의 일종으로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1997년 3월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 짓기 시작한 대우 비즈니스 센터 공사에 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시공은 영국의 보이스, 설치는 미국의 RTKL, 설비관리는 대우그룹 계열인 동우공영 폴란드 법인, 분양과 마케팅은 영국의 할리 & 바커와 조운즈 랭 우든, 호텔 운영은 미국의 힐튼호텔이 각각 맡았다.

### ■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 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 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 ~ 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 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 ■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기업활동의 실적·계획·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이를 지수화 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 라고도 한다.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장래 전망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다. 기업가의 판단과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BIS는 다른 경기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경기전망지수는 비교적 쉽게 조사되고 작성될 수 있지만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상공회의소·산업은행·한국은행 등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경기호전 전망에 대한 '○·×' 방식 설문 후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다음 '○' 비율에서 '×' 비율을 빼고 100을 더해준다. 만약 '○'의 비율이 54.5%이고 '×'의 비율이 45.9%라면 기업경기전망지수는 54.5에서 45.5를 뺀 뒤 100을 더해준 109가 되며, 이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악화될 것으로 비관하는 응답자보다 9% 가량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